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규정 신설〉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6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46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28.
- (3) 회 부 일 : 2025. 3.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긴급성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재난 등 안전관리 상황에 서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야 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 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의 유형·정도 및 특성 등을 고 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 에 관한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 얼 작성

	<u>2.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장비 및 용품의 안전점검 및 개선</u> <u>3.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애유형별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u> <u>4.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u> <u>5. 그 밖에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2. 검토의견

-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자력으로 이동하기 어렵고, 지적장애인은 응급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함.¹⁾

이처럼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피 등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할 소지도 크며, 장애에 따른 제약 요인으로 인해 부수적인 사고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명시적인 차별금지 조치와 선제적·추가적 대응이 요구됨.

- 이에 개정안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영역에 ‘재난 등 안전관리 상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다 실질적·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 제19조의2제1항은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을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재난이나 사고 시에도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이미 시설물 접근·이용

1) 박문서 등 9인. (2015). 안전약자 대피특성 연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용역보고서.

또는 비상시 대피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 또한 이러한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둘째, 개정안 제19조의2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정 의무사항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²⁾

2)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에는 ‘맞춤형 통합 재난정보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장애유형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대응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 등과 같은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참고자료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관련 내용).

또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국무총리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장관 작성)에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라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를 발간하고 있음.⁴⁾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년~2029년)에는 ‘전략 4.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중 2.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피해유형별 재난안전관리 대책’에서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참고자료 2: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장애인 관련 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시 ‘예방’과 ‘대피’ 단계에서 장애 유형별로 요구되는 사전 준비와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장애인 재난안전 가이드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종씩 발간해 왔으며, 향후에는 이를 3년 주기로 개정·발간할 계획임.

<2024년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

가이드 명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가이드	계단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가이드	시각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가이드	의미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가이드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가이드
주요 이용 대상자	- 신체장애 - 내부기관 장애	- 신체장애 - 내부기관 장애	시각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 장애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인데,⁵⁾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적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및 입법 취지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 셋째, 개정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조6)에서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 보장을 이미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정정희. (202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법이론실무연구, 9(2), 253-292.

6)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제31조의2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을, 제34조의5제9항제4호에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을, 제66조의4제1항제6호의2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의무를, 제66조의9제1항제1호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체계적 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 보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통해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수립 및 재난예방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실익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5~'29)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23~27)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자료 1: 제6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 중 관련 내용〉

시·청각 장애인의 뉴미디어 접근성 제고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시범서비스 및 기능개선을 통해 인터넷 미디어 접근성 제고
 -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상용화 추진('24~), 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시범 서비스('23) 및 상용화 추진('26~)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통합 플랫폼 구축('25~) 및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도 기반 화면해설방송 콘텐츠 활성화 추진
- 다매체(지상파 UHD, IPTV 등) 지원 정보소외계층 맞춤형 통합 재난정보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서비스 추진('24~)
 - 통합 재난정보 미디어 변환시스템 및 다매체 지원 가능한 정보소외계층 맞춤형 재난정보 미디어 서비스 기술 표준(안) 마련('24~)

국가 차원의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강화

-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 재난안전 관련 대책 추진 검토
 -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및 재난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분류 및 보호, 후속조치 등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 재난 대응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 재난안전 특화 전문인력 양성 규정* 등 소관부처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지원인력 역량 강화 추진
 - * (예시) 소방학과 관련 학과생 중 전문인력 양성, 소방공무원 자격시험에 장애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양성방안 마련
 - 장애인의 안전체험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유형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재난상황 시 원활한 대응 강화
 - * 기존 안전체험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안전체험관에 장애인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장애인 특성화 안전체험관 설립 등 검토
 - 재난 상황에 대비, 지자체에서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대피·지원체계 마련 독려하여 장

애인에 대한 긴밀한 재난지원 강화

- *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에서 119, 경찰 등에 정보를 제공, 장애인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재난 대피소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등 사전 조치 이행 등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장애인 확진 및 격리 필요 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설치('23~24. 28병상)



- 감염병 상황에서 대응요령 및 감염병 정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적기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매뉴얼 고도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주요 내용

- (목적) 감염병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
- (내용)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활동지원 등)
- (부록)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의사소통 지원 등)

- 감염병 재난 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정보 습득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 및 영상 수어 상담 서비스 등 지속 추진
 - 청각장애인을 위해 감염병 관련 브리핑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영상 수어 상담 지원
 - 시각장애인을 위해 감염병과 관련된 인쇄물 등 배포 시 음성변환 출력 QR코드를 포함하여 원활한 정보 전달 지원

감염병 재난 시 돌봄 지원체계 운영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한시적으로 가족돌봄을 허

용하여 활동지원 돌봄 공백 최소화

- 활동지원 비수급자 및 가족 등 확진될 경우에도 긴급활동급여를 지원을 통해, 감염병 확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 방지

○ 감염병 상황 속에서 발달장애 특성으로 제공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 가족급여 허용 및 돌봄 지원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제공기관 휴관, 대체인력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비용청구조건 완화

* 감염병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시간 미만으로 출석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비용 지급 등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장애인 관련 사항〉

전략 4.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2.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 수립)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특성과 주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체계적 관리 ○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사고 통계 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마련 ○ 거동이 불편한 침수 취약계층의 대피 지원 - 침수 취약시설 거주 장애인·고령자와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도우미 간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 상시 관리 - 위급상황으로 119 신고 시 침수 취약계층의 특성 정보를 사전 인지 및 긴급구조를 우선 지원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 확대 추진 ○ ICT 서비스를 활용한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①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노인·장애인 가정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실시간비대면 돌봄 제공, ② 가정 내 설치된 ICT 장비를 통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노인·장애인·환자 등 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전 생활 지원*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재난유형별로 안전취약계층의 취약성,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및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확대·운영 ○ 안전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추진 ○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실시 - (학교) 교직원 대상 안전연수에 체험·실습형 프로그램 확대·운영 - (공연장) 종사자 대상 관객 안전관리 요령, 비상시 관객 대피 교육 - (사업장) 근로자 대상 CPR(심폐소생술) 교육 및 AED(자동제세동기) 보급 확대

- (다중이용시설 등) 정전 예방 행동요령 컨설팅 및 교육훈련 추진*

* 저소득층, 노후아파트의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관리자 기술컨설팅 지원 등

유형	피해유형별 재난안전관리 대책
23. 도로교통 재 난 · 사고	☐ 경찰청 ○ 교통사고 발생·위험 구간에 대하여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 및交通安全시설 개선 ○ 관계기관 및 민간 협업을 통한交通安全문화 캠페인 전개 ○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상 찾아가는交通安全 교육·홍보 실시
43. 안전취 약 계 층	가. 목 적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 아동·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 및 안전사고 예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 아동·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 및 안전사고 예방 ○ 재난 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 후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해 일상으로 회복도모 ○ 재난 시 장애인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 장애인(보호자 포함)에 대한 맞춤형 교육 추진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나. 주요대책 【주요과제】 ☐ 행정안전부

○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추진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5월)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2년~'26년)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6대 분야* 17개 과제(65개 세부과제) 추진
- *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 보건복지부

- (아동·노인학대예방) 아동·노인학대 관련 인식개선 및 홍보, 위기아동 및 학대취약노인 조기발견 지원체계 운영, 피해아동 및 학대피해노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
- (아동·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동·노인학대 관련 인프라 필요성 강조, 아동·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아동·노인 학대 예방 인프라 설치 추진
- (아동안전교육) 아동을 위한 재난 및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교수법 교육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ICT 기기를 노인·장애인 가정 내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실시간·비대면의 돌봄 제공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안전점검) 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시설물 신축, 증개축, 개보수비 지원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
-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재난 경험자 및 재난대응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대응인력 소진관리, 트라우마 조사 연구 등 진행
-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모·신생아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 조성

■ 소방청

- 안전취약계층에 대상 소방안전교육체계 구축(법·제도 정비)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지원)범위 확대, 시스템 활용 관리 체계화

【예방대책】

▣ 보건복지부

- 아동·노인학대 관련 인식개선 및 홍보, 위기아동 및 학대취약노인 조기 발견 지원체계 운영, 피해아동 및 학대피해노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기관 등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한 아동·노인학대 예방사업 지침 개정
- 아동·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아동·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설치 추진
- 아동을 위한 재난 및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 안전교육 교수법 교육 등 실시
-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 제공 및 노인학대 예방 홍보·교육 등을 통한 노인인권 증진
- 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신축, 증개축, 개보수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동·하절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재난 트라우마 예방 및 극복 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 소방청

- 안전취약계층의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재난 시 장애인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체계 재정립,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등 지속적인 맞춤형 콘텐츠 개발 추진

- 지속 가능한 안전교육 체험시설 확충, 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 안전강사 양성 및 취약계층 맞춤형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체계적 관리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 * 장애인의 경우 거동불편 등으로 교육 수혜에 어려운 점을 감안, 보호자도 소방안전교육 대상으로 하는 근거 마련(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행사,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시기별 홍보영상 제작·홍보 등 국민 밀착형 소방안전교육·확대
- 안전취약계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민·관 협업 추진
 - 재난에 대한 장애인 개개인의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장애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 환경·지리적 여건으로 체험시설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 대상으로 이동체험차량이 방문하여 안전체험 기회 제공(교육부)
 - 재한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교육 지원하여 대한민국 안전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안전사고 저감 추진(법무부)
- 주택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추진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 이·통장 협의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민·관 협업을 통한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보급 확대
 - 외국인 및 반지하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추진
 - 장애인 편의성에 맞는 시각표시기능 감지기(청각장애인) 및 불빛유도 감지기(지적장애인) 보급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 콘텐츠 개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정기회의·간담회 등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소방예방정보시스템(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관리) 활성화를 통한 안전취

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체계화 및 지속 관리

【대비대책】

■ 보건복지부

- 댁내 설치된 장비(화재, 응급호출, 활동량감지기)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재난 경험자 및 재난 대응인력 심리지원체계 가동
 -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및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 재난 대응인력 소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심리지원을 위한 단계별·대상별 지침의 개발·보급 및 지자체 등 재난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소방청

- 장애인 대상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등 맞춤형 정보 제공
 -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 ※ (시각장애인) 점자·오디오 가이드북 / (청각장애인) 수어·영상 가이드북
 - 재난 브리핑 및 Live 재난방송 시 동시 수어 통역 병행 송출
- 외국인·취약계층 119신고서비스 편의성 제고
 - 취약계층을 위한 119 신고의 편의성 개선(보고 누르는 119신고), 재외 거주 국민(여행객 등) 응급신고 글로벌 연계 체계 구축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행정안전부	●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 안전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소방청	안전취약계층 대상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자료: 보건복지부